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가단51242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1. C(D생)와 피고 사이에 경남 합천군 E 답 2,500㎡에 관한 2020. 8. 4.자 증여계약은 7,627,14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627,1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F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법원 2007가소5206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22. 870,6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7. 8.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타채655호로 C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C는 2020. 8. 4. 경남 합천군 E 답 2,5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0. 8. 10. 접수 제119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합천등기소 2022. 1. 25. 접수 제1390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15,6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합천군청 및 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2021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만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기초사실을 더하여 보면, C는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증여는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가액배상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 이후 피고는 주식회사 G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22. 1. 1. 기준 공시지가는 42,250,000원(= 16,900원 × 2500㎡)이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627,1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법 2007가소52062호 판결 확정 이후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7. 8. 4. C를 상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도 이유 없다(피고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거나 신청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진